

제15차 実行理事会

○일시 : 1985. 7. 19(금) 08:00~09:2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대책

정액제에 대한 보사부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히 중소규모 회원병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므로 본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 개선을 건의토록 하는 등 대책방안을 회장단에 일임하다.

2. 한우 포장육 판매안내

농촌 소사육의 어려움과 정부 육류수급정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보사부가 한국냉장(주)를 통해 출고가격으로 쇠고기를 회원병원에서 구입토록 협조요청한데 대하여 본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만을 회원병원에 안내키로 하다.

제16차 実行理事会

○일시 : 1985. 7. 26(금) 08:00~08:4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 특별강연자 선정

특별강연 주제 “향후 100년의 병원의 발전에 관한 전망”의 연자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처해있는 실정을 잘 알고 병원에 대한 경륜도 풍부하며 상호 대화가 가능한점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보다 재미교포인 홍준식선생(뉴욕카톨릭의료원 가정의학과장겸 의료원장. 특별보좌관)을 선정키로 하다.

2. 의보연합회 조사권 부여 대책

정부 당국이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를 개정하여 의료보험조합 연합회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서 현지 출장조사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보험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보험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의료계의 사기가 위축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개정은 보험자와 심사기구가 각 각 독립된 이후에 고려토록 건의키로 하되 본회 견해와 동일한 위협과도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제17차 実行理事会

○일시 : 1985. 8. 2(금) 08:00~09:1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법인 출연금 증여세 검토

국세청이 비의료인 및 관계자가 출연하였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의료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형평의 원리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법과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적적성 여부를 검토키

로 협의하다.

2. '86신규수련병원 지정심의 방향협의

수련병원 지정요건중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전속전문의 확보 실태를 기준함이 원칙이나 임상병리과의 경우 그 절대수가 소요에 부족 되고 여자 임상병리 전문의는 지방군소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원 3 과중 1개과는 자문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병원표준화 심사성적은 상급 채점기준의 모호한 부분이 있을 뿐만아니라 심사위원에 따라 채점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협회도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신규병원을 육성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반영하는 방향으로 본회안을 마련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기로 협의하다.

제18차 実行理事会

○일시 : 1985. 8. 9(금) 08:00~09:0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적출물 등 처리규칙 개정 대책

개정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하면 적출물 등 소각시설이 4 제곱미터 이상(1,2평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당국의 병상수급통제 방침에 의거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병원 자체내에 기존 적출물 소각시설이 없어 증축이 필요한 경우도 동 방침에 저촉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아 차기 실행이사회에 보고기로 하다.

2. 가정의 수련교육에 대한 본회 대책 재검토

가정의 수련교육과 관련하여 그간 본회와 관련학회가 다루어 왔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여 본회 대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차기 실행이사회에 상정기로 하다.

제19차 実行理事会

○일시 : 1985. 8. 16(금) 08:00~09:0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공제조합환자 진료비 적체대책

공제조합이 환자진료비 지급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등 진료비 적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중시, 회원병원의 적체실태를 파악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규의 조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2. 환자권리선언에 대한 본회대책

회장단에 위임된 동안에 대해 본회는 조항별 의견과 종합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특히 제5항의 경우 『환자자신의 진료에 관한 정보 및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를 『환자자신의 진료기록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로 수정하는 한편 의협과 협의,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다. *